

제1회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 의사록

개 최 일 시	2012년 12월 12일(수), 11:00~
출 석 인 원	위원 6 名
참고인 참석자	2 名 (이종서 팀장, 홍상현 연구원)

번 호	안 건 명	회의결과
부 의 안 건		
제 1 호	부위원장 선임	선임 (이세섭 위원)
제 2 호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기본계획	원안통과
제 3 호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약관 개정	원안통과
제 4 호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원안통과

1. 참석자

- 위 원 장 : 서 강 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
- 위 원 : 이 세 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이 해 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경 호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최 순 일 (주누리미디어 대표이사)
- 간사위원 : 박 재 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사무국장)

2. 회의 진행 내용

<박재현 간사위원> - 성원보고

운영위원 6분 중 6분이 참석하시어, 공공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개최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서강수 위원장>

제1회 공공저작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안건으로는 “부위원장 선임”과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기본계획”, “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약관 개정”,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등 4건이 있습니다.

각 안건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고, 안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1호 “부위원장 선임”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 위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이신 이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순일 위원>

재청합니다.

<서강수 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이세섭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축하드립니다. 그럼 새롭게 선임된 이세섭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섭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된 만큼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수 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제2호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간사위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간 기업

에서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에 저작물 민간 제공을 위한 경험이나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전담인력이나 절차, 과금기준 등이 없었으니 민간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실무자의 62%가 공공저작권 신탁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48만건에 대해 저작권리 확인 및 권리확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없이 공정하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저작권리를 갖고 있는 저작물은 민간부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인 “공공누리”를 도입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올해 신탁저작물은 작년보다 2.5배 증가한 23개 기관 18만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신탁된 저작물의 이용허락 건수는 145건, 3,714종의 신탁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보급을 확대하여 금년 12월 현재 54개기관 43만건에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저작권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저작물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민간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서의 수요가 높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민간에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방되지 않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발굴하여 신탁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고, 저작권단체연합회나 복사전송권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신탁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컨퍼런스 개최나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함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탁된 저작물을 저희 진흥원 뿐만 아니라 포털에서도 검색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저작권 관리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탁시스템을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DRM 솔루션 도입 등 정보보안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공저작권신탁관리사무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신탁 수요와 민간기업의 공공저작물 이용 요구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섭 위원>

저작권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까지 대행이 가능한건지?

<박재현 간사위원>

가능합니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경호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인 CLMS와 연계되고 있는 건지?

<박재현 간사위원>

현재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강수 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의견없음

<서강수 위원장>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제2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이어서 부의안건 제3호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약관 개정”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간사위원>

신탁업무규정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신탁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기존 규정에서 누락되었던 내용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신탁관리 업무규정에서 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내용을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신탁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탁관리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세분화하여 일일이 열거하여 분리신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신탁저작물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3의 공익법인에 기증할 수 있도록 제3자 수익자 지정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미공표 저작물의 신탁시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표로 간주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될 혼란을 예방하였습니다.

셋째, 이용계약 약관에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침해시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약관 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견없음

<서강수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약관 개정”에 대한 제3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의안건 제4호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간사위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5년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용 형태나 기준이 비현실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신탁단체의 사용료 징수 규정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복사전송권협회나 음악저작권협회 등 민간신탁단체의 사용료 기준의 70%를 적용하였습니다. 민간신탁단체와 동일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기존의 70% 기준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재위탁 등 민간저작권 단체와의 혼란이 우려되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영상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규정이 없어 실제 사용료 부과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조문들을 하나의 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저작물의 공연·방송사용료, 어문저작물의 복사·전송사용료 관련 내용들을 새롭게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서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견없음

<서강수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대한 제4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네 개의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제 막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각 분야의 역량있는 분들께서 위원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 진흥원 및 신탁관리사무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새롭게 태동하는 공공저작권 운영위원회를 발판으로 공공저작권 사업이 크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회 공공저작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